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☑기타)

	담당 금융IT안전국 담당자 장수영 연락처 02-3145-7127
요청대상 행위	□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의 적용 대상이나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'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'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○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1항 관련 서류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
판단	□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판단이유	□ 「전자금융거래법」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4조의2세4항제1호) 첨부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1호). ○ 위 서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기대 효과, 책임 소재, 실질적 감독가능성, 피해자 구체절차 등을 명확히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의 서류를 인용한 것일 뿐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□ 귀 사가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"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적용 대상이므로 ○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시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4조의2제5항 각 호에서 제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중 하나인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1항제2후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 또한 제출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1호). ○ 다만, 「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제2호에 관한 서류(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

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업무절차 등 그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※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